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고동진 · 최수진 · 이달희
김재섭 · 이성권 · 서범수
배현진 · 강명구 · 조지연
박덕흠 · 서명옥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.

한편,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·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 역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조, 제36조, 제83조, 제89조 및 제93조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로봇”이란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2조의 지능형 로봇 등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람의 작업을 돕는 장비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기계·기구·설비”를 “기계·기구·설비, 로봇”으로 한다.

제83조제1항 중 “기계·기구·설비”를 “기계·기구·설비, 로봇”으로, “그”를 “자동제어시스템 등 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,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정하여”를 “한국산업표준,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93조제1항 전단 중 “정하여”를 “한국산업표준,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“로봇”이란 「 <u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</u> 」 제2조의 지능형 로봇 등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람의 작업을 돕는 장비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.
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① 사업주는 건설물, <u>기계·기구·설비</u> 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,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,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	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① ----- ----- <u>기계·기구·설비, 로봇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(이하 “위험성평가”라 한다) 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83조(안전인증기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(이하 “유해·위험기계등”이라 한다)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(이하 “안전인증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<후단 신설>

② (생략)

제89조(자율안전확인신고) ①
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
해·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자율
안전확인대상기계등”이라 한
다)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
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3조(안전인증기준) ① -----

기계 · 기구 · 설비, 로봇-----

-----자동 제어
시스템 등 그-----

-----.

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,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9조(자율안전확인)의 신고 ①

-----한국산업표준, 국제적인
기준 등을 고려하여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3조(안전검사) ① -----

-----한국산업표준, 국
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---

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(이하 “안전검사”라 한다) 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안전 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 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 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